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4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김성원·김영진·권명호

전주혜・이 용・배현진

최승재 · 정희용 · 이주환

추경호 · 엄태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된다고 정 하고 있음.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헌법정신의 구현과 입법의 발전,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각고의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정치원로인 만큼 사망한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부 회원들에게는 생전 활동등을 심사하여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주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

건을 갖춘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정치원로는 남북화해와 평화를 지켜볼 수있는 상징적 공간인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평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헌정회원의 공로를 기리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제3항 등).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한다.

- 거.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연천현충원에는 제1항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중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3항제2호"를 "제5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4항제5호"를 "제5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 은 항 제3호의2 중 "제5조제6항"을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조제4항제1호"를 "제5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4항제5호"를 "제5조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4항제1호"를 "제5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2에 따른 묘역의 구분은 국립연천현충원에 한한다.

7의2. 헌정발전공헌자 묘역

제22조제2항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1629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 중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 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거목·제3항의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 헌정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①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	1
충원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u><신 설></u>	거.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전직·현
	직 국회의원 중 사망한 사
	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연천현충원에는 제1항제1
	호거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
	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u>③</u> ~ <u>⑤</u> (생 략)

⑥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u>제5조제</u> 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 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 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 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생략)
- 2. <u>제5조제3항제2호</u>에 따른 사 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 장 대상 해당 여부
- 3. <u>제5조제4항제5호</u>에 따른 국

지 아니하다.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 ⑦</u> 제5항제1호
·.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u>제5조제</u>
<u>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u>
<u>3</u> কু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u>제5조제4항제2호</u>
3 제5주제5항제5항

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3의2. <u>제5조제6항</u>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의3. ~ 6. (생 략)

② ~ ⑥ (생 략)

-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 전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 (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생략)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 목·파목 또는 같은 조 <u>제6</u> <u>항</u>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 람

3의2. <u>제5조제7항</u>
3의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데11조(안장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u>
1. (현행과 같음)
2
가제7
ठ् <u>रे</u>

- 나. <u>제5조제4항제1호</u>·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여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 ③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4 한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② (생략)
 -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면적을 넘을 수 없다.

나. <u>제5조제5항제1호</u>
3
<u>제5조제5항제5호</u>
③
<u>제5조제5</u> 참.제1호
<u>제5조제5</u> <u>항제1호</u>
항제1호
항제1호
항제1호
<u>항제1호</u>
항제1호
<u>항제1호</u>

④ (생 략)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 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 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7. (생 략)

<u><신</u>설>

- 8. (생략)
- ② (생 략)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생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u>제5조제4항</u> <u>제2호</u>,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있다.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다만, 제7호의2에 따른 묘역의
구분은 국립연천현충원에 한한
<u>다.</u>
1. ~ 7. (현행과 같음)
7의2. 헌정발전공헌자 묘역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현
행과 같음)
②제5조제5항
<u>제2호</u>

③ (현행과 같음)